

#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908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5.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5. 2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 2. 개정이유

- 고성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운영의 활성화에 앞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3. 주요내용

-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 개정(안 제3조)
-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입장료 인상과 어린이 및 단체의 입장요금 삭제(안 별표1)
- 주차요금을 수수료에 별도로 추가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적정관리(안 제9조제3항)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요금을 어른(일반인)과 청소년, 학생, 군인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의한 연령을 규정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토록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내용중 입장요금, 주차요금 등 개정 중요안에 대하여 깊이 심사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 합니다.

## 5. 질의 및 답변

- 문 :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이 없는데 지정예상은 ?
- 답 : 9개소가 조사되었는데 편의시설 설치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문 : 특별한 시설보다는 유원지의 청소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 재고바람.
- 답 : 입장료와 주차요금은 타시군의 유원지, 공원 등과 비교하여 유원지 이용에 부담감이 없도록 비슷하게 배려하여 정했습니다.
- 문 :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 재대후 대학재학생은 일반인(어른)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감면대상이 확대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답 : 방금 지적하여 주신 대상까지 확대되도록 추후 재검토 하겠습니다.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5. 5.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